

논문심사규정

2023. 03. 23. 제정

2024. 10. 21.

2026. 04. 04. 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핵의학기술학회(이하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핵의학기술」(이하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별로 담당 편집위원을 지정하며, 담당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또는 핵의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저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 있거나 금전적·개인적·학문적 이해관계 등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 ③ 위촉된 심사위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심사를 회피하여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④ 학회 임원 또는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해당 저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며, 해당 저자는 심사위원 선정·심사 및 게재 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제 3조 (심사위원의 수)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2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 결과가 현저히 상충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성 보완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1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조 (종설 및 기타 원고의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종설(Review Article)과 기타(Et Cetera)의 경우에도 일반 투고 논문과 동일한 절차로 심사한다.

제 5조 (심사의 공정성 및 기밀 유지)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기한과 기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피심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6조 (인공지능(AI) 도구의 활용)

- ① 인공지능은 보조적으로만 활용하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심사위원에게 있다.
- ② 비밀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인공지능 도구에는 심사원고나 비공개 심사자료를 입력할 수 없다.
- ③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사용한 도구, 목적·범위 및 활용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명확히 보고한다.

제 7조 (심사 결과의 판정)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전면 수정 후 재투고)’ 중에서 하나로만 판정하여야 한다. 단 ‘수정 후 게재가능’은 심사위원이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투고자가 충실히 수정 및 보완하여 재제출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과정을 통해 재심사 없이 게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8조 (게재불가 판정)

심사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학술적 가치가 부족하거나 연구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게재불가(전면 수정 후 재투고)’로 판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판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 9조 (심사 결과의 결정)

심사위원 2인 모두가 투고원고를 ‘게재불가(전면 수정 후 재투고)’로 판정한 경우에는 이를 최종 판정으로 한다. 심사위원 1인만이 ‘게재불가(전면 수정 후 재투고)’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저자에게 수정 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사를 진행하거나 심사위원 1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게재 여부는 별첨 판정기준표를 준용하되, 추가 심사위원이 위촉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전체 심사의견과 저자의 답변 및 수정 내용을 종합하여 심의하고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 10조 (논문심사의견서 및 심사기간)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되, 심사기간은 심사를 위촉 받은 날을 기준으로 2주일 이내로 한다.

제 11조 (심사 지연에 대한 조치)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2주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회 독촉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심사의뢰를 해촉하고, 편집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12조 (심사 결과의 통보)

논문의 심사결과는 심사가 종료된 후 투고자에게 온라인으로 논문심사의견서와 함께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 13조 (이의제기)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논리적 근거나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투고자의 이의를 수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제 14조 (수정·보완 원고의 제출기한)

원고의 수정과 보완 요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4주 이내에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 및 보완한 논문을 본 학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고 철회로 간주하며, 제출 지연에 따른 ‘게재불가(전면 수정 후 재투고)’로 판정한다.

제 15조 (최종 게재 여부의 결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수정 및 보완 요청 후의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별첨, 논문심사 판정기준표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전면 수정 후 재투고)	최종 판정
2				게재가능
1	1			수정 후 게재
	2			
1		1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1	1		
		2		
1			1	수정 후 재심사
	1		1	
		1	1	
			2	게재불가 (전면 수정 후 재투고)